#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29

발의연월일: 2025. 2. 18.

발 의 자:서명옥·박준태·김예지

진종오 · 서천호 · 고동진

최은석 · 최수진 · 이달희

김장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 등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기 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 원의 결정도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을 결정함에 있어 전문 가로 구성된 「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 과를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에 대한 특례) 교육부장관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의료기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2조의2(의과대학 등의 입학정
	원에 대한 특례) 교육부장관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
	인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의료기사
	를 양성하는 대학의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보건의료기본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구성된
	<u>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u>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